

제283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차(부록)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발 의 자 : 홍인표 의원, 김재우 의원, 김규학 의원, 이영애 의원, 박우근 의원, 윤기배 의원, 이진련 의원, 임태상 의원, 황순자 의원
- 제출일자 : 2021년 6월 4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8일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 ~ 제3조)
- 문화사업의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문화예술자료의 수집·관리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3조)
-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6조)
-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제21조)
- 지역문화예술인물 현창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22조~제24조)

3. 검토의견

□ 개정취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대적, 정책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방향을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분리하여 별도로 설정하고,
-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사항을 강화함으로써 대구시 문화 예술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적법성 여부

-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 문화진흥권 보장을 위해 문화예술공간 설치 권장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이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였고,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과 시민의 문화권리 신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 안 제4조는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명시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문화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문화예술 자료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민이 문화예술 자료 정보에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자료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문화예술자료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는 문화예술 자료의 수집 대상이 되는 기관·단체 및 그들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취소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7조**는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공예술 공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8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을 7개 시설로 규정하였음.
-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미술작품 설치와 미술작품심의 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 **안 제22조와 안 제23조**는 문화예술분야에서 대구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업적과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인물의 현장을 위한 사업 운영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조문 체계 및 주요 내용]

번호		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제1조	목적	조례의 제정 목적 명시
	제2조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내용을 준용
	제3조	시장의 책무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제4조	문화사업의 지원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보조금 지원
제2장	제5조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규정
	제6조	문화복지의 증진	
제3장	제7조	문화예술자료의 수집·관리·활용	문화예술 자료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함.
	제8조	문화예술자료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문화예술자료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
	제9조	위원의 해촉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3조	문화예술자료 수집대상 및 의무사항	문화예술 자료의 수집 대상이 되는 기관·단체 및 그들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
제4장	제14조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취소와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	

	제16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	
제5장	제17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문화예술활동 진흥 및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공예술 공간 설치에 관한 사항
	제18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을 7개 시설로 명시
	제19조	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건축비용의 비율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20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제21조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
제6장	제22조	지역문화예술인물현창	지역문화예술 인물 현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제23조	사업	
제7장	제24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 명시

□ 검토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명문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2019. 8. 12. 전부개정을 통해 시행된 현 조례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문화예술 진흥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문화예술진흥 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업무를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처리 하도록 하였고,
 -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문화시설 설치를 권장할 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본 조례개정의 의의가 있겠음.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주요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문화예술진흥 계획의 수립 등	-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삭 제 -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진흥조례」 개정 시 포함 예정
문화사업의 지원	신 설	-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문화예술진흥 위원회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진흥조례」 개정 시 포함 예정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의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및 지정 취소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변 경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의는 사도 지역문화 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사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는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진흥조례」 개정 시 포함 예정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신 설	-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시설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을 규정

- 2020. 1. 1. 기준으로 대구시의 문화시설 현황은 인구 백만 명 당 36.5개*이며, 이는 8개 특·광역시 중 7위(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에 해당하는 열악한 수준임.

* 참고자료 1 [인구 백만 명 당 문화시설 현황] 참조

- 이러한 현실에서 문화예술의 육성·진흥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일정규모(연면적 10,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함으로써,
- 대구시로 하여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부분의 특·광역시에서는 이미 조례에 반영**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반영하는 것에 다소 늦은 감이 있으니 권장에 그치지 않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 하겠음.

** 참고자료 2 [타시도 문화예술 공간 설치관련 조례 현황] 참조

-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의 많은 사업들이 민간이나 산하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추진하는 만큼, 예산 집행에 대한 엄정한 관리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음.
- 더불어, 대구시의 문화기반 시설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업무담당부서에서는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및 그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시스템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1 인구 백만 명 당 문화시설 현황

(단위 : 명, 개)

구분	지역	인구 수	문화시설 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지역1	서울	9,729,107	42.14	18.50	13.16	4.73	0.31	2.16	2.57	0.51
	부산	3,413,841	36.32	12.89	9.08	2.34	4.39	3.22	4.39	0.00
	대구	2,438,031	36.50	17.64	6.56	1.64	2.87	4.51	3.28	0.00
	인천	2,957,026	38.89	17.92	9.47	1.69	2.71	3.38	3.38	0.34
	광주	1,456,468	49.43	15.79	8.24	9.61	4.81	4.81	3.43	2.75
	대전	1,474,870	42.04	17.63	10.17	3.39	2.03	3.39	3.39	2.03
	울산	1,148,019	40.07	16.55	8.71	0.00	2.61	4.36	4.36	3.48
	세종	340,575	64.60	32.30	20.55	0.00	5.87	2.94	2.94	0.00
	경기	13,239,666	42.83	20.92	10.27	4.00	1.13	3.32	2.34	0.76
	강원	1,541,502	150.50	37.63	64.22	12.33	7.14	13.62	11.68	3.89
	충북	1,600,007	85.00	30.00	27.50	6.87	1.87	7.50	6.87	4.37
	충남	2,123,709	82.87	29.67	26.84	4.24	3.77	8.48	7.06	2.83
	전북	1,818,917	95.66	32.44	22.54	9.90	7.15	9.35	7.70	6.60
	전남	1,868,745	118.80	37.46	33.71	17.12	5.35	11.24	11.77	2.14
	경북	2,665,836	79.15	24.76	26.26	4.13	3.00	10.13	8.63	2.25
	경남	3,362,553	65.72	21.41	22.30	2.97	2.38	6.54	5.95	4.16
	제주	670,989	205.67	32.79	96.87	32.79	7.45	4.47	2.98	28.32
	총계	51,849,861	58.19	21.87	17.30	5.15	2.49	4.94	4.44	1.95
지역2	수도권	25,925,799	42.12	19.67	11.26	4.01	1.00	2.89	2.55	0.62
	지방	25,924,062	74.26	24.07	23.34	6.29	3.97	6.98	6.33	3.28
	총계	51,849,861	58.19	21.87	17.30	5.15	2.49	4.94	4.44	1.95

※ 자료출처 :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발간, 2020. 1. 1. 기준)

참고자료 2 타시도 문화예술 공간 설치관련 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내용
대구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안 제24조의2)	<p>다만, 각 호의 건축물이 복합된 경우 해당용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3. 판매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7. 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서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42조)	<p>그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층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부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주택(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8. 교육연구시설, 9. 노유자시설, 10. 운동시설, 11. 관광 휴게시설
인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6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광주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비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대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3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주택. 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 시설, 7. 의료시설 중 병원, 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울산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6. 교육연구시설, 7. 노유자시설, 8. 수련시설, 9. 운동시설 10. 업무시설, 11. 숙박시설, 12. 관광휴게시설